

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국 토 해 양 부

목 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총 칙(General)

| | |
|------------------------------|---|
| 제1조 목적 (Purpose) | 1 |
| 제2조 정의 (Definitions) | 1 |
| 제3조 적용범위 (Application) | 2 |

제2장 지하 관로시설의 구축·관리·이용 (Build-up,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irport Underground Facilities)

| | |
|--|---|
| 제4조 공사시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ng) | 2 |
| 제5조 운영시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in Operating) | 3 |
| 제6조 지하 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data of airport underground facilities) | 3 |
| 제7조 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Role and duties of related agencies) ... | 4 |
| 제8조 자료의 검토처리 (Review of data) | 4 |
| 제9조 보고의무 (Responsibility of reporting) | 5 |

제3장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Build-up and Operation Of GIS)

※ 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 |
|---|----|
| 제10조 준용규정 (Applicable regulations) | 5 |
| 제11조 지리정보시스템의 관리 등 (Management of GIS) | 5 |
| 제12조 지리정보의 갱신(Update of geographic information) | 6 |
| 제13조 자료의 복구 (Revival of data) | 7 |
| 제14조 장애대책 및 조치 (Disorder measure) | 7 |
| 제15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Build-up and oper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7 |
| 제16조 프로그램 관리 등 (Management of the programme) | 8 |
| 제17조 자료제공 (Provision of data) | 9 |
| 제18조 자료제공의 제한(Restrictions on providing data) | 10 |

제4장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 | |
|---------------------------------------|----|
| 제19조 보안관리 (Security management) | 10 |
|---------------------------------------|----|

제5장 보 칙(Supplementary Rules)

| | |
|--|----|
| 제20조 지도점검 (Supervision) | 11 |
| 제21조 전문기술지원기관(Technical support agency) | 11 |
| 제22조 외주용역(Outsourcing) | 12 |
| 제23조 예산지원(Budget support) | 12 |
| 제24조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GIS) | 13 |
| 제25조 유효기간(Duration) | 13 |

| | |
|---------------------|----|
| 부 칙 (Addenda) | 13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지리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14 |
| [별지 제2호 서식]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목록대장 | 14 |
| [별지 제3호 서식]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 15 |
| [별지 제4호 서식] 지리정보 구축(갱신)대장 | 15 |
| [별지 제5호 서식]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16 |
| [별지 제6호 서식] 지리정보 제공요청 및 승인서 | 17 |
| [별지 제7호 서식] 교부대장 | 18 |
| [별지 제8호 서식] 관리·운영실태 점검결과 결과(보고서) | 19 |
| [별표 1] 점검표 (Checklist) | 2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0조의 규정에 따라 공항내 지하에 시설된 각종 관로시설에 대한 도면작성, 비치 등을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구축·관리하는 방법과 해당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 지하 관로시설”(이하 “지하 관로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항내 옥외 지하에 시설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전력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송유관시설, 지반정보(보링정보) 및 공동구 등을 말한다.
2. “공항 지하 관로시설 지리정보시스템”(이하 “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리주체가 지하 관로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사·탐사, 수집·저장, 조작·분석 및 표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 일련의 정보체계를 말한다.
3. “공항 지하 관로시설 지리정보”(이하 “지리정보”라 한다)라 함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관리되는 지하 관로시설 관련 도형 및 속성정보 등을 말한다.
4. “도형정보”라 함은 지하 관로시설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표현한 자료로서 수치지도, 지하 관로시설도, 인화사진 및 스캐닝한 설계자료 등을 말한다.
5. “속성정보”라 함은 도형자료에 대한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의 세부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말한다.

6. “갱신”이라 함은 지리정보의 조사·탐사자료를 신규 구축 및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7.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하 관로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말한다.
9. “관리책임자”라 함은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자료의 관리 및 등록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문기술지원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지리정보의 갱신과 정보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사용기관”이라 함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리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항내에서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하거나, 지하 관로시설을 소유·관리·운영하는 모든 기관 및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항의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지하 관로시설의 구축·관리·이용

제4조(공사시 안전관리)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굴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도면 검토후 지하 관로시설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상태 등을 조사하여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지하 관로시설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와 공사시공의 단계마다 방호방법, 관계자의 입회, 긴급시 연락방법,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 관로시설의 종류,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현장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주의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노출된 지하 관로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점검통로를 설치한다.
5. 지하 관로시설 주위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변지반이 침하하는 것에 주의하고, 관계자의 입회하에 관로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시 안전관리) 지하 관로시설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 관로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지하 관로시설이 지나가는 위치에 일정간격으로 표지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하 관로시설의 설치시기, 노후화 등을 판단하여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는 관로시설에 대하여는 교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하 관로시설의 노출, 파손, 이상징후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관로시설이 파손이나 훼손사고 등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안전에 관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 관로시설의 자료수집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지하 관로시설에 관한 자료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지하 관로시설에 관한 자료를 분실, 도난,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역할 및 임무) 지하 관로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에 관계되는 자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관리주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

가.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나. 공항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 관로시설의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구축 및 관리하고, 이용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는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시행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시에는 지하 관로시설에 대한 준공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항공청은 지하 관로시설물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는 각 주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검토처리)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성 여부를 검토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는 자료의 보완이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무)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현황

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운영 체계
2. 지리정보시스템 및 지리정보의 관리·운영실태
3. 지리정보 제공현황
4. 기타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운영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계획 등

제3장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준용 규정)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련 상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지리정보시스템의 관리 등)① 관리주체의 장이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 및 최신의 지리정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업무협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지리정보의 갱신)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로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와 통보받지 못한 갱신자료에 대하여 수시로 수집·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이 관리하여야 하는 지리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 관로시설의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업체 및 공사비 등 공사현황
2. 지하 관로시설의 종류 및 위치, 매설 깊이, 규격, 재질 등
3. 지하 관로시설의 지리정보화 유무 및 변경사항
4. 지하 관로시설의 유지보수사항
5. 기타 지리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는 관로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내용을 공사시행전에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에는 최종 정보를 관리주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장은 지하 관로시설물 소유자 등으로 부터 통보받은 갱신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 갱신을 완료한 후에는 해당 지하 관로시설 소유자에게 정확히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⑥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에, 조치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정보 구축(갱신)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복구)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 자료의 파괴, 훼손, 멸실, 도난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지리정

보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안전한 장소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리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지리정보 자료가 파손·멸실·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복제된 전산파일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 대책 및 조치)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이 12시간이상 활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지리정보 이용을 위한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승인 및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발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지리정보 사용승인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내에 상주하는 기관으로서 지리정보의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2. 화재, 방재, 재난, 재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시사용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3.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리정보의 이용방법은 관리주체의 장이 지정하는 제한구역에 설치된 전용단말기로 지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 사용승인기관에 대하여 지리정보 이용을 해당 공항 및 해당 업무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
- ⑥ 지리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목적 및 열람·전송·저장·출력 등 필요한 이용범위를 정하여 관리주체의 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⑦ 관리주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여 지리정보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증설·이설 및 교체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프로그램 관리 등)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나 파일 등의 변경이력에 대해 사용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용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지리정보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주체의 장에게 변경 또는 개선건의 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2항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제공) ①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리정보 자료제공 요청자에게 출력물 등으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항공청장
2. 공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공공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관리주체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지리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신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제공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리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및 타당성
2. 활용 후 관리대책
3.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
4. 보안상 자료의 제공가능성 여부
5. 기타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④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부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공의 제한) 관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리

정보 요청자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자료를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제공 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2. 「측량법」 제27조(측량성과의 국외반출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해당되는 경우
4.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22조(지리정보 등의 보호)에 해당되는 경우
5. 관리주체의 장이 보안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 안 관 리

제19조 (보안관리) ① 이 지침 시행에 따른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국토해양부국가지리정보보안관리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지도점검) 지방항공청장은 지하 관로시설의 구축·운영·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지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 관로시설 구축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2. 지하 관로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표지 관리상태
3. 지하 관로시설의 유지·관리의 적정성
4. 지리정보 갱신의 적정성
5. 지리정보시스템 관리 및 보안관리의 적정성
6. 기타 지하 관로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전문기술지원기관) ①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 13조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운영시스템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리정보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지리정보시스템의 아이디 발급
5. 지리정보의 갱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리정보의 현황조사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리정보의 교육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관리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의 장이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지리정보시스템의 구

축, 정보의 갱신,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관리주체의 장이 하여야 하는 업무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며, 업무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주체의 장이 정한다.

제22조(외주용역)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취득업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보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술지원기관이 지리정보를 갱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지리정보 보호의무와 위반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제23조(예산지원) ① 관리주체의 장은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에게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장은 관리주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산확보가 될 때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관리주체의 장은 지리정보체계를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표준화되고 호환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 ①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관리주체의 장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년차적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공항별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2009. 6. 3)

- ①(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훈령의 폐지) 「공항 지하 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항공안전본부훈령 제25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2. 5.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514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리정보 복제(복사)본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제작일자 | 제 목 | 형 태 | 수량(건) | 보호 기간 | 보관장소 | 비고 | 결 재 | 담당자 | ○○장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란에는 보호기간 경과자료의 처리결과 기재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 목록대장

| 분류일자 | 자료명칭 | 자 료 내 용 | 자료구분 | 보관장소 | 비고 | 결 재 | 담당자 | ○○○장 |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구분”란에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으로 기재
 ※ 관리주체의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은 “비공개”목록작성은 예외로 한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대장

| 연번 | 접수 일자 | 공 사 현 황 | | | | | 전산 입력 일자 | 비고 |
|----|----------|---------|------|------|-----|-----|----------------|----|
| | | 공사명 | 공사기간 | 감독부서 | 시공사 | 감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된 순서에 따라 연번을 기록한다

- 예 : WA-001(상수:WA, 하수:SE, 전력:EL, 통신:CO, 송유:OI, 가스:GA, 보링:BO, 공동구:CD)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지리정보 구축(갱신)대장

| 연번 | 접수번호 | 구축(갱신) 현황 | | | | | | 비고 |
|----|------|-----------|------|------|-----|-----|------|----|
| | | 공항명 | 위 치 | 도엽번호 | 처리자 | 확인자 | 처리일자 | |
| | | | 계류장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수번호는 별지 제3호서식 현장조사서 접수 및 전산입력 대장 연번을 기록하고, “비고” 란에는 ‘구축’ 또는 ‘갱신’을 기록한다.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지리정보시스템 장애일지

| | | 결재 | | |
|-------------------|-----------|-----|-----|-----|
| | | 담당자 | ○○장 | ○○장 |
| 1. 장애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 2. 장애 발생 업 무 명 | | | | |
| 3. 장애처리시기 | | | | |
| 4. 사 용 자 | | | | |
| 5. 장애발생내용 | | | | |
| 구 분 | 내 | | 용 | |
| 장애발생 상 황 | 업 무 명 | | | |
| | 장애내용 | | | |
| | 발생경위 | | | |
| 장애복구 조치사항 | | | | |
| 확인사항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관리·운영 실태 점검결과 결과(보고서)

1. 목적
2. 대상 공항
3. 공항별 검사관(팀) 및 일정
4. 총괄 평가 및 권고
5. 공항별 세부 내용
 - 가. 00공항
 - 주요 점검사항
 - 점검시 지적사항
 - 조치할(권고) 사항

[별표 1]

점 검 표

| | | |
|---|------|------|
| ○ 공항명 : | | |
| ○ 검사일시 : 0000년 00월 00일 00:00 ~ 0000년 00월 00일 00:00 | | |
| ○ 검사관 : (서명) | | |
| ○ 수검자 : (서명) | | |
| 검 사 항 목 | 검사여부 | 검사결과 |
| 1. 공사시 안전관리 준수여부 ○공사시 지하 관로시설의 위치 등의 사전조사 여부 ○관계기관과의 연락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여부 ○지하시설물의 종류, 규격 등을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 여부 ○주변지반 침하 및 주요 관로시설의 경우 관계자 입회여부 2. 운영시 안전관리 여부 ○지하 관로시설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 설치 여부 ○주기적인 점검 실시 여부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 3.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 개발 및 성능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지리정보의 갱신관리를 적기에 실시하고 있는지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 ○점검일지 기록 및 관리상태(장애사항 관리기록 등) ○유지보수일지 기록 및 유지상태 ○전산장애 관련 원인분석 및 조치상태 ○보안관리 실태 | | |

※ 검사여부는 “시행”, “미시행” 또는 “해당없음”으로 기록하고, 검사결과에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